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0
------	------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다. 상정결과 :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가. 제안이유

-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 패션전시·박람회에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패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간 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해외컬렉션 참가지원

- 지원대상 : 해외 4대 컬렉션 On Show 참가 디자이너

- 지원사항 : 해외컬렉션 개최 직접경비(장소임차, 해외PR, 세일즈 에이전트 등)

- 평가사항 : 해당시즌 컬렉션 개최 후 수주 및 홍보실적

② 해외패션전시회 참가지원

- 참여전시 : 유럽, 미주 등 국제적 인지도 높은 전시회 10여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패션업체 연 100여개사

- 지원사항 : 단체부스 임차료(50~85%) 지원 및 통역·마케팅,
개별전시 부스임차료(최대 3백만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3 ~ 2016. 2)

○ 주요업무

-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 컬렉션 참가 디자이너 브랜드별 수주성과 및 바이어 DB 구축·관리

- 해외패션전시회 참가업체 사전·현지·사후지원 실행 및 관리

- 해외패션전시회 참가업체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

- 참여전시회별 바이어 DB 구축·관리

○ 소요예산 : 950백만원(2012년)

730백만원(2013년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2012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계획(문화산업과 2094, 2012. 3. 8)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03.8.8 ~ 2006.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06.8.8 ~ 2009.2.28(2년6개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09. 3. 1 ~ 2010.2.28(1년, 한국패션협회)
- 2010. 3. 1 ~ 2011. 2. 28(1년, 한국패션협회)
- 2011. 3. 1 ~ 2012. 2. 28(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12. 3. 1 ~ 2013. 2. 28(1년, 한국패션협회)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패션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제공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유망 패션전시회 및 4대 컬렉션(밀라노, 런던, 파리, 뉴욕)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진출지역의 패션 마켓 동향 및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대한 전문지식, 중소패션업체의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진성바이어 관리 등 패션분야 해외 마케팅에 대한 자체 네트워크 및 전문성이 중요한 사업임.
- 또한, 중소패션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통관업무 및 적합 전시회 추천 등의 컨설팅이 필요하므로 패션분야 마케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본 동의안은 서울 소재 중소패션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제 공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유망 패션전시회 및 4대 컬렉션(밀라노, 런던, 파리, 뉴욕) 참가를 지원하는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안임.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국내 디자이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관리, 해외패션전시회 참가업체의 홍보·마케팅 및 사전·현지·사후 지원 및 관리 등으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능력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중소패션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통관업무 및 적합 전시회 추천 등의 컨설팅 능력, 글로벌 패션 트렌드 및 진출 지역의 마켓 동향에 대한 전문지식,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바이어 관리 등의 노하우가 중요한 사업이므로 패션분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2010년 국비보조 5억원 포함

14억5천만원, 2011년 국비보조 4억원 포함 10억원, 2012년 국비보조 없이 9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3년에도 7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언제까지 민간영역인 패션산업에 서울시가 개입할 예정인가.

답변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 위주이지 공공부문의 역할은 많지 않음. 관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여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좀더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40
----------	------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패션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통한 체계적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해외컬렉션 참가지원

- 지원대상 : 해외 4대 컬렉션 On Show 참가디자이너

- 지원사항 : 해외컬렉션 개최 직접경비 (장소임차, 해외 PR, 세일즈 에이전트 등)

- 평가사항 : 해당시즌 컬렉션 개최 후 수주 및 홍보실적

② 해외패션전시회 참가지원

- 참여전시 : 유럽, 미주 등 국제적 인지도 높은 전시회 10여개

- 지원대상 1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연 100여개사

- 지원사항 : 단체부스 임차료(50~85%) 지원 및 통역·마케팅, 개별 전시 부스임차료(최대 3백만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3 ~ 2016. 2)

○ 주요업무

-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 컬렉션 참가 디자이너 브랜드별 수주성과 및 바이어 DB 구축·관리
- 해외패션전시회 참가업체 사전·현지·사후지원 실행 및 관리
- 해외패션전시회 참가업체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
- 참여전시회별 바이어 DB 구축·관리

○ 소요예산 : 950,000천원(2012)
730,000천원(2013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2012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계획(문화산업과-2094, 2012. 3. 8)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03.8.8 ~ 2006.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06.8.8 ~ 2009.2.28(2년6개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09. 3. 1 ~ 2010.2.28(1년, 한국패션협회)
- 2010. 3. 1 ~ 2011. 2. 28(1년, 한국패션협회)
- 2011. 3. 1 ~ 2012. 2. 28(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12. 3. 1 ~ 2013. 2. 28(1년, 한국패션협회)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제공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유망 패션전시회 및 4대 컬렉션(밀라노, 런던, 파리, 뉴욕)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진출지역의 패션 마켓 동향 및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대한 전문지식, 중소기업의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진성바이어 관리 등 패션분야 해외 마케팅에 대한 자체 네트워크 및 전문성이 중요한 사업임.

○ 또한, 중소기업 대상 해외마케팅을 위한 통관업무 및 적합 전시회 컨설팅 등의 컨설팅이 필요하므로 패션분야 마케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전분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제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09.07.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29)